관악 대한민국 청년수도

2023회계연도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관악구결산검사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하

2024년 5월 13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4년 4월 3일부터 2024년 5월 3일까지(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작성하여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첨부한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 세출결산, 채권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 위원

대표위원	주 무 열	(인)
위 원	김 태 동	(인)
위 원	김 현 숙	(인)
위 원	유 미 순	(인)
위 원	조 연 수	(인)

목 차

Ⅰ. 결산검사 경과 ····· 1

Ⅱ. 결산검사 총괄현황 ····· 5

1. 재 정 여 건 ····· 7
2. 세입·세출결산 ····· 8
3. 기 금 결 산 ····· 16
4. 재무제표결산 ····· 18
5. 성 과 보 고 서 ····· 22
6. 결산서첨부서류 ····· 23
   (1) 공유재산 ····· 23
   (2) 물 품 ····· 24

Ⅲ. 개선및권고사항 ····· 25

1. 세 입 부 문 ····· 27
2. 세 출 부 문 ····· 34
3. 예 비 비 ····· 42
4. 기 금 ····· 44
5. 재 무 제 표 ····· 46
6. 성 과 보 고 서 ····· 49

Ⅳ. 수 범 사 례 ····· 51

Ⅰ. 결산검사 경과

Ⅰ.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4. 4. 3. ~ 5. 3. (20일 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주 무 열	결산검사 총괄	구의원
위 원	김 태 동	세입·세출, 성과보고서, 성인지예산	(前)구의원
위 원	김 현 숙	세입·세출, 기금, 공유재산	(前)공무원
위 원	유 미 순	세입·세출, 보조금, 첨부서류 22종 등	세무사
위 원	조 연 수	세입·세출, 재무제표, 물품	세무사

3. 결산검사 세부일정

구 분	일자별	내 용	비 고
구청,보건소 의회사무국	2024. 4. 3.	일정 및 검사방향 협의	
	2024. 4. 8. ~ 5. 3.	부서별 결산검사 실시	
	2024. 5. 7. ~ 5. 13.	결산검사 의견서 작성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 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협의

Ⅱ. 결산검사 총괄현황

1. 재정여건

○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기금의 수입지출) 및 결산상 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재정수입과 지출의 변동추이

(단위: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회계	세입	838,061,479,055	1,180,421,219,055	1,185,123,183,917	1,284,135,021,470	1,195,471,880,235
	세출	709,808,948,530	1,034,951,840,128	1,003,162,249,748	1,081,354,786,506	1,029,272,539,226
	결산상잉여금	128,252,530,525	145,469,378,927	181,960,934,169	202,780,234,964	166,199,341,009
특별회계	세입	28,196,223,936	28,774,178,602	28,388,706,961	23,103,985,140	26,535,731,230
	세출	13,851,252,029	12,466,996,061	23,283,058,320	15,929,947,550	15,294,240,970
	결산상잉여금	14,344,971,907	16,307,182,541	5,105,648,641	7,174,037,590	11,241,490,260
기 금	수입	16,865,645,956	25,090,607,618	23,458,406,910	31,761,811,942	29,217,265,459
	지출	4,485,704,820	10,757,519,500	8,645,004,268	15,971,108,475	15,739,597,465
	결산상잉여금	12,379,941,136	14,333,088,118	14,813,402,642	15,790,703,467	13,477,667,994
총 계	세입(수입)	883,123,348,947	1,234,286,005,275	1,236,970,297,788	1,339,000,818,552	1,251,224,876,924
	세출(지출)	728,145,905,379	1,058,176,355,689	1,035,090,312,336	1,113,255,842,531	1,060,306,377,661
	결산상잉여금	154,977,443,568	176,109,649,586	201,879,985,452	225,744,976,021	190,918,499,263

○ 2023회계연도의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시가격 인하에 따른 재산세 및 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함이다.

○ 일반회계 세출을 주민수로 나눈 “1인당 재정지출규모”는 현년도에 2,135,615원이다.

2. 세입·세출 결산

(1) 총괄

❍ 2023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단위: 원)

회계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1,168,648,651,690	1,222,007,611,465	1,044,566,780,196	177,440,831,269
일반회계	1,140,784,016,450	1,195,471,880,235	1,029,272,539,226	166,199,341,009
특별회계	27,864,635,240	26,535,731,230	15,294,240,970	11,241,490,260

회계별	현년도 채무상환	다음연도 이월액(D)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	44,339,631,260	20,661,485,120	-	16,960,974,241	95,478,740,648
일반회계	-	37,074,619,540	17,070,096,120	-	16,794,103,911	95,260,521,438
특별회계	-	7,265,011,720	3,591,389,000	-	166,870,330	218,219,210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222,007,611,465원으로 예산현액 1,168,648,651,690원보다 53,358,959,775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5.47%인 1,044,566,780,196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177,440,831,269원이다.

❍ 이중 명시이월비 44,339,631,260원, 사고이월비 20,661,485,120원, 보조금실제반납금 16,960,974,241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5,478,740,648원이다.

❍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177,440,831,269원임이 확인되었다.

(2) 일반회계

가. 세 입

일반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결산액	1,140,784,016,450	1,224,430,736,755	1,195,471,880,235	1,927,269,540	27,031,586,980
결산확인액	1,140,784,016,450	1,224,430,736,755	1,195,471,880,235	1,927,269,540	27,031,586,980
차 액	0	0	0	0	0

※ 정리보류액: 舊결손처분액(「지방세징수법」 개정사항 반영, 개정일: 2022.1.28.)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1,195,471,880,235원은 예산현액의 104.79%로서 54,687,863,785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예산대비 세수 증가 및 조정교부금 세입 증가에 기인한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의 대사

(단위: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195,471,880,235	1,195,471,880,235	0

-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연도별 세입현황 분석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정리보류액 (D)	예산대비 징수결정액 (B/A)	징수결정 대비 수납액 (C/B)	징수결정대비 정리보류액 (D/B)
2023년	1,140,784,016,450	1,224,430,736,755	1,195,471,880,235	1,927,269,540	107.33	97.63	0.15
2022년	1,229,922,664,171	1,313,135,146,760	1,284,135,021,470	1,364,182,170	106.76	97.79	0.10
증감	△89,138,647,721	△88,704,410,005	△88,663,141,235	563,087,370	-	-	-

○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증가된 주된 이유는 세수 증가 및 조정교부금 세입 증가로 인한 것이며, 전년도 수납액 1,284,135,021,470원보다는 88,663,141,235원이 덜 수납되었다.

○ 정리보류의 주된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790,478,130원, 무재산 1,127,348,790원 등이다.

세목별 세입 결산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정리보류액 (D)	미수납액 (E = B-C-D)
총 계		1,140,784,016,450	1,224,430,736,755	1,195,471,880,235	1,927,269,540	27,031,586,980
지방세		118,518,892,000	121,536,407,020	119,754,887,860	140,334,630	1,641,184,530
세외수입	소 계	53,933,645,000	93,685,138,731	66,510,303,141	1,786,934,910	25,387,900,680
	경상적세입	40,328,416,000	49,974,454,591	49,598,639,581	-	375,815,010
	임시적세입	8,245,653,000	32,147,943,650	10,934,437,760	1,786,934,910	19,426,570,980
	지방행제재·부과금	5,359,576,000	11,562,740,490	5,977,225,800	-	5,585,514,690
지방교부세		16,862,100,000	23,660,757,700	23,660,757,700	-	-
조정교부금등		237,265,673,000	270,638,193,940	270,638,193,940	-	-
보조금등		508,552,934,000	508,566,333,470	508,566,333,470	-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5,650,772,450	206,343,905,894	206,341,404,124	-	2,501,770

○ 세입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는 전체 세입의 10.02%인 119,754,887,860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5.56%인 66,510,303,141원이 수납되었다.

○ 지방교부세는 1.98%인 23,660,757,700원, 조정교부금 등은 22.64%인 270,638,193,940원, 보조금 등은 42.54%인 508,566,333,470원이 수납되었다.

○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이월금인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체 세입의 17.26%인 206,341,404,124원이 수납되었다.

나. 세 출

일반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결산액	1,083,697,088,000	1,140,784,016,450	1,029,272,539,226	54,144,715,660	57,366,761,564
결산확인액	1,083,697,088,000	1,140,784,016,450	1,029,272,539,226	54,144,715,660	57,366,761,564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1,083,697,088,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57,086,928,45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140,784,016,450원임.
- 세출예산 전용액은 총 1,847,652,000원으로 전용의 내용으로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서버 및 IOT계측기 설치)을 위한 예산 전용(200,000,000원), 폐기물 수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용 안전장치 설치를 위한 전용(174,000,000원) 등이 있으며 예산 이용은 없었음.
- 조직개편에 따라 31,920,628,570원을 이체함.
- 예비비는 총 5,810,956,770원을 지출하였는데, 전세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결정 하였다.
-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02%에 해당되는 57,366,761,564원이며,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수해 대비 폐기물 처리비용 불용등이며,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은 16,780,704,201원이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의 대사

(단위: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029,272,539,226	1,029,272,539,226	0

-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 과 목	예 산 액 (A)	예산성립후 증감액 (B)	예 산 현 액 (C=A+B)	지 출 액 (D)	다음연도 이월액(E)	보조금 반납금(F)	집행잔액 (C-D-E-F)
합 계	1,083,697,088	57,086,928	1,140,784,016	1,029,272,539	54,144,716	16,780,704	40,586,057
일반공공행정	65,278,087	5,005,171	70,283,258	54,263,673	11,956,849	17,657	4,045,079
공공질서및안전	10,849,145	124,801	10,973,946	10,623,067	62,383	4,806	283,689
교 육	17,266,769	-	17,266,769	16,726,003	-	14,516	526,250
문화및관광	30,492,409	3,212,331	33,704,740	29,204,393	2,583,571	302,227	1,614,548
환 경	54,319,185	326,200	54,645,385	48,426,953	198,380	67,527	5,952,525
사 회 복 지	615,243,529	11,837,493	627,081,022	594,794,416	13,379,247	11,103,210	7,804,148
보 건	24,804,501	3,604,093	28,408,594	22,786,913	181,679	3,575,231	1,864,771
농림해양수산	513,147	-	513,147	406,960	-	33,145	73,042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334,563	1,168,440	18,503,003	15,953,792	1,524,441	81,124	943,646
교통및물류	28,227,921	17,622,386	45,850,307	36,371,205	8,582,039	8,547	888,516
국토및지역개발	50,448,260	20,046,685	70,494,945	50,679,620	15,676,126	1,373,817	2,765,382
예 비 비	16,345,834	△5,860,671	10,485,163	-	-	-	10,485,163
기 타	152,573,738	-	152,573,738	149,035,545	-	198,895	3,339,298

○ 세출예산현액 1,140,784,016천 원에 대하여 1,029,272,539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4,144,716천 원, 보조금반납금은 16,780,704천 원이며, 40,586,057천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다.

○ 지출액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이며 총 지출액은 594,794,416천 원, 노인·청소년 부문에서 가장 많이(219,449,052천 원) 지출되었다.

(3) 특별회계

가. 세 입

특별회계 세입결산 확인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합 계	27,864,635,240	39,300,579,490	26,535,731,230	1,243,745,690	11,521,102,57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36,220,000	1,774,520,150	1,187,183,760	64,428,750	522,907,640
주 차 장 특 별 회 계	26,728,415,240	37,526,059,340	25,348,547,470	1,179,316,940	10,998,194,930
결산확인액	27,864,635,240	39,300,579,490	26,535,731,230	1,243,745,690	11,521,102,570
차 액	0	0	0	0	0

❍ 세입결산 개요

- 수납액 26,535,731,230원은 예산현액의 95.23%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67.51%이다.
- 정리보류액은 1,243,745,690원으로서 이는 주로 소멸시효 완성에 기인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29.31%인 11,521,102,570원으로 주로 납세태만에 기인한 것이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의 대사

(단위: 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26,535,731,230	26,535,731,230	0

- 각 특별회계 세입결산서의 수납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나. 세 출

특별회계 세출결산 확인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21,068,699,000	27,864,635,240	15,294,240,970	10,856,400,720	1,713,993,55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136,220,000	1,136,220,000	1,058,394,880	-	77,825,120
주 차 장 특 별 회 계	19,932,479,000	26,728,415,240	14,235,846,090	10,856,400,720	1,636,168,430
결산확인액	21,068,699,000	27,864,635,240	15,294,240,970	10,856,400,720	1,713,993,550
차 액	0	0	0	0	0

○ 세출결산 개요

- 예산액은 21,068,699,000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6,795,936,24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27,864,635,240원이고,
- 예산 전용은 1건 33,388,000원(불법주정차 기간제근로자 보수)이며, 이체는 없고 예비비 지출은 1건 86,115,000원(남현소공원 지하주차장조성)이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의 대사

(단위: 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금액	차액
15,294,240,970	15,294,240,970	0

- 각 특별회계 세출결산서의 지출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의 금액과 같았다.

(4)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 2023회계연도의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결산

(단위: 원)

구 분	명시이월		사고이월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합 계		44,339,631,260		20,661,485,120
일반회계	관악형 중소기업 인턴십 일자리 추가 공모선정에 따른 지원금 외 36건	37,074,619,540	생활권역별 대표 상권 조성사업비 외 44건	17,070,096,120
주차장 특별회계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건설 외 1건	7,265,011,720	상도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차장건설	3,591,389,000

❍ 검사결과 명시이월액은 44,339,631,26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0,661,485,120원이다.

3. 기금의 결산

○ 현년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 금 현 황

(단위: 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A)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79,683,878,212	13,477,667,994	29,217,265,459	15,739,597,465	93,161,546,206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 합 계 정)	756,963,115	△756,963,110	8,508,500	765,471,610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25,808,355,679	7,427,445,799	7,427,445,799	-	33,235,801,478
중소기업육성기금	5,556,579,029	437,128,990	6,432,128,990	5,995,000,000	5,993,708,019
남북교류협력기금	206,535,727	7,873,762	7,873,762	-	214,409,489
고 향 사 랑 기 금	-	47,549,300	47,549,300	-	47,549,300
자 활 기 금	1,530,271,611	19,245,489	178,845,489	159,600,000	1,549,517,100
양 성 평 등 기 금	1,039,700,464	17,291,995	45,691,995	28,400,000	1,056,992,459
노인회관건립기금	9,033,150,203	△2,331,726,317	342,226,463	2,673,952,780	6,701,423,886
노인요양원건립기금	515,856,785	△515,856,785	12,956,910	528,813,695	-
체 육 진 흥 기 금	282,394,407	△33,993,750	12,034,200	46,027,950	248,400,657
환경공무관자녀 학자대여금기금	801,014,273	55,959,395	97,464,395	41,505,000	856,973,668
폐기물종합처리장 건 립 기 금	26,298,157,574	5,218,155,044	5,218,155,044	-	31,516,312,618
재 난 관 리 기 금	4,300,120,864	4,285,433,921	8,227,244,801	3,941,810,880	8,585,554,785
옥외광고발전기금	590,790,589	△165,143,116	153,738,934	318,882,050	425,647,473
도로굴착복구기금	2,484,081,446	△287,067,075	851,518,555	1,138,585,630	2,197,014,371
식 품 진 흥 기 금	479,906,446	52,334,452	153,882,322	101,547,870	532,240,898

❍ 2023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79,683,878,212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9,217,265,459원을 더하고 사용액 15,739,597,465원을 공제한 93,161,546,206원이다.

❍ 최근 5년간의 기금 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5년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22,366,742,849	34,746,683,985	49,079,772,103	63,893,174,745	79,683,878,212	37.4
증	조성액	16,865,645,956	25,090,607,618	23,458,406,910	31,761,811,942	29,217,265,459	14.7
감	사용액	4,485,704,820	10,757,519,500	8,645,004,268	15,971,108,475	15,739,597,465	36.9
당해연도말 조성액		34,746,683,985	49,079,772,103	63,893,174,745	79,683,878,212	93,161,546,206	28.0

❍ 검사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15개(16종) 기금의 현년도말 현재액은 93,161,546,206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13,477,667,994원이 증가한 것이다.

4. 재무제표의 결산

(1) 총괄현황(일반·특별회계·기금)

(단위: 백만 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결과		
	자산(A+B)	부채(A)	순자산(B)	비용(A)	수익(B)	운영결과(A-B)
2023년	2,425,230	33,536	2,391,694	967,620	996,073	(28,453)
2022년	2,453,195	48,650	2,404,545	1,025,200	1,096,597	(71,397)
증 감	(27,965)	(15,114)	(12,851)	(57,580)	(100,524)	42,944

(2) 재정상태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유 동 자 산	315,293	13.00	336,124	13.70	(20,831)	(6.20)
투 자 자 산	16,854	0.70	14,929	0.61	1,925	12.89
일반유형자산	239,419	9.87	232,199	9.46	7,220	3.11
주민편의시설	440,772	18.17	465,841	18.99	(25,069)	(5.38)
사회기반시설	1,400,115	57.73	1,391,158	56.71	8,957	0.64
기타비유동자산	12,777	0.53	12,944	0.53	(167)	(1.29)
자 산 총 계	**2,425,230**	**100.00**	**2,453,195**	**100.00**	**(27,965)**	**(1.14)**
유 동 부 채	19,742	58.87	28,264	58.10	(8,522)	(30.15)
장기차입부채	-	-	-	-	-	-
기타비유동부채	13,794	41.13	20,386	41.90	(6,592)	(32.34)
부 채 총 계	**33,536**	**100.00**	**48,650**	**100.00**	**(15,114)**	**(31.07)**
고정순자산	2,091,642	87.45	2,100,363	87.35	(8,721)	(0.42)
특정순자산	108,823	4.55	92,112	3.83	16,711	18.14
일반순자산	191,229	8.00	212,070	8.82	(20,841)	(9.83)
순자산총계	**2,391,694**	**100.00**	**2,404,545**	**100.00**	**(12,851)**	**(0.53)**
부채 및 순자산 총계	**2,425,230**	**-**	**2,453,195**	**-**	**(27,965)**	**(1.14)**

❍ 2023회계연도 말 관악구의 총자산은 2,425,230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27,965백만 원(1.14%)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전년대비 재정자금 등 유동자산 20,831백만 원(6.20%) 감소와 주민편의시설자산의 25,069백만 원(5.38%) 감소로 인한 것이다.

❍ 반면 2023회계연도 말 관악구의 총부채는 33,536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15,114백만 원(31.07%)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대비 일반미지급금 등 유동부채의 8,522백만 원(30.15%) 감소 등으로 인한 것이다.

(3) 재정운영

가. 성질별 재정운영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율(%)
인 건 비	172,896	17.87	174,933	17.06	(2,037)	(1.16)
운 영 비	164,621	17.02	140,420	13.70	24,201	17.23
정부간이전비용	18,707	1.93	20,509	2.00	(1,802)	(8.79)
민간등이전비용	583,998	60.35	659,432	64.32	(75,434)	(11.44)
기타비용	27,398	2.83	29,906	2.92	(2,508)	(8.39)
비 용 총 계	**967,620**	**100.00**	**1,025,200**	**100.00**	**(57,580)**	**(5.62)**
자체조달수익	199,553	20.04	207,404	18.92	(7,851)	(3.79)
정부간이전수익	792,807	79.59	886,528	80.84	(93,721)	(10.57)
기 타 수 익	3,713	0.37	2,665	0.24	1,048	39.32
수 익 총 계	**996,073**	**100.00**	**1,096,597**	**100.00**	**(100,524)**	**(9.17)**
재정운영결과	**(28,453)**	-	**(71,397)**	-	**42,944**	**(60.15)**

❍ 2023회계연도 말 관악구의 비용을 성질별로 살펴볼 때 인건비 172,896백만 원(17.87%), 운영비 164,621백만 원(17.02%), 정부간이전비용 18,707백만 원(1.93%), 민간 등 이전비용 583,998백만 원(60.35%), 기타비용 27,398백만 원(2.83%)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반면 2023회계연도 말 관악구의 수익은 자체조달수익이 199,553백만 원(20.04%)이고, 정부간이전수익 792,807백만 원(79.59%), 기타수익 3,713백만 원(0.37%)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 비용은 967,620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57,580백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민간등 이전비용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수익은 996,073백만 원이며 이 중 자체조달수익이 199,553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7,851백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지방세수익 감소에 의한 것이고, 중앙정부(및 서울특별시)로부터 이전받은 수익은 792,807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93,721백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 감소에 의한 것이다.

❍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는 △28,453백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42,944백만 원 이익규모가 감소되었다.

나. 기능별 재정운영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년					2022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Ⅰ.사업순원가	841,113	495,425	345,688	-	345,688	892,388	555,901	336,487	-	336,487
Ⅱ.관리운영비	-	-	134,194	(26,506)	107,688	-	-	134,764	(22,973)	111,791
Ⅲ.비배분비용	-	-	18,819	-	18,819	-	-	21,079	(58)	21,021
Ⅳ.비배분수익	-	-	48,467	-	48,467	-	-	39,972	(58)	39,914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	-	450,235	(26,506)	423,728	-	-	452,358	(22,973)	429,385
Ⅵ.일반수익	-	-	478,687	(26,506)	452,181	-	-	523,755	(22,973)	500,782
Ⅶ.재정운영결과 (Ⅴ-Ⅵ)	-	-	(28,453)	-	(28,453)	-	-	(71,397)	-	(71,397)

❍ 2023회계연도 관악구의 사업순원가는 345,688백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107,688백만 원, 비배분비용 18,819백만 원 및 비배분수익 48,467백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423,728백만 원이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452,181백만 원을 차감한 2023회계연도 관악구의 재정운영결과는 △28,453백만 원이다.

(4) 순자산변동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3년				2022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계
Ⅰ.기초순자산	2,214,810	95,163	94,572	2,404,545	2,168,341	92,330	72,115	2,332,786
Ⅱ.재정운영결과	(3,858)	(5,097)	(19,498)	(28,453)	(46,128)	(2,812)	(22,457)	(71,397)
Ⅲ.순자산의증가	5,833	130	28	5,991	341	21	-	362
Ⅳ.순자산의감소	33,534	11,973	1,788	47,295	-	-	-	-
5.기말순자산 (Ⅰ-Ⅱ+Ⅲ-Ⅳ)	**2,190,968**	**88,416**	**112,310**	**2,391,694**	**2,214,810**	**95,163**	**94,572**	**2,404,545**

○ 2023회계연도 관악구의 기초순자산은 2,404,545백만 원이고 재정운영결과 △28,453백만 원, 순자산의 증가 5,991백만 원, 순자산의 감소 47,295백만 원을 가감한 기말순자산은 2,391,694백만 원이다.

(5) 채 권

채 권 현 황

(단위: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A)	당해연도 발생액(B)	당해연도 소멸액(C)	당해연도말 현재액 (D=A+B-C)
합 계	17,185,304,010	6,447,916,787	6,519,219,361	17,113,929,436
일반회계	6,464,419,765	413,718,120	773,172,970	6,104,964,915
기 금	10,720,884,245	6,034,198,667	5,746,118,391	11,008,964,521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113,929,436원으로 확인되었다.

5. 성과보고서

❍ 2023년 성과보고서는 47개의 정책사업 목표의 137개 지표 중 초과달성 27개, 달성 97개, 미달성 13개로 성과를 달성하였다.

❍ 관악구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감사담당관, 청정도시국, 의회사무국은 100%를 달성하였으며, 평균 90.5% 달성률을 보였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수(A)	초과달성, 달성수(B)	미달성	달성률 (B/A)
계	9	47	137	124	13	90.5%
감 사 담 당 관	1	1	3	3	0	100.0%
기 획 경 제 국	1	8	20	16	4	80.0%
행 정 혁 신 국	1	5	17	14	3	82.3%
복 지 가 족 국	1	9	23	20	3	86.9%
청 년 문 화 국	1	7	18	17	1	94.4%
청 정 도 시 국	1	5	18	18	0	100.0%
안전건설교통국	1	6	19	18	1	94.7%
보 건 소	1	5	17	16	1	94.1%
의 회 사 무 국	1	1	2	2	0	100.0%

6. 결산서 첨부서류의 결산

(1) 공유재산

❍ 2023회계연도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

(단위: 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가액	감소액	
합 계	2,148,101,471,513	24,630,694,933	759,731,660	2,171,972,434,786
행정재산	2,074,006,062,707	24,525,818,723	6,594,660	2,098,525,286,770
공용재산	385,331,503,473	24,525,818,723	6,594,660	409,850,727,536
공공용재산	1,685,648,719,234	-	-	1,685,648,719,234
보존용재산	3,025,840,000	-	-	3,025,840,000
일반재산	15,372,258,190	104,876,210	753,137,000	14,723,997,400
건설중인재산	58,723,150,616	-	-	58,723,150,616

❍ 검사결과 2023회계연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683,808.2㎡에 1,502,995,154,754원과 건물 201,747.9㎡에 303,003,800,304원, 입목죽 303,975목 6,598,586,224원, 공작물 22,197건 288,670,662,108원, 무체재산 127건 1,327,856,230원, 유가증권 3건 1,210,000,000원, 용익물권 67건 9,231,194,550원, 회원권 7건 212,030,000원, 건설중인재산 27건 58,723,150,616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 재산액은 2,171,972,434,786원이다.

(2) 물 품

❍ 2023연도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다음과 같다.

물품 증감 현황

(단위/ 수량: 개, 금액: 원)

구 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내역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수 량	1,534	288	13	1,809
금 액	14,013,133,196	890,363,730	18,456,000	14,885,040,926

❍ 검사결과 2023회계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행정용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말 14,013,133,196원에 대해 당해연도 신규취득 등으로 890,363,730원이 증가하고, 불용물품의 처분 등으로 18,456,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4,885,040,926원이다.

Ⅲ.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 부분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등 국·내외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입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예산현액 대비 53,358,959천 원을 초과 징수하고, 미수납액 중 3,171,015천 원을 정리보류하여 재정여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가. 세입예산 편성 및 세수입 확보의 적정성 검토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정리보류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C/A	C/B
합 계	1,168,648,651,690	1,263,731,316,245	1,222,007,611,465	3,171,015,230	38,552,689,550	104.56	96.69
일반회계	1,140,784,016,450	1,224,430,736,755	1,195,471,880,235	1,927,269,540	27,031,586,980	104.79	97.63
특별회계	27,864,635,240	39,300,579,490	26,535,731,230	1,243,745,690	11,521,102,570	95.23	67.51
의료급여기금	1,136,220,000	1,774,520,150	1,187,183,760	64,428,750	522,907,640	104.48	66.90
주차장	26,728,415,240	37,526,059,340	25,348,547,470	1,179,316,940	10,998,194,930	94.83	67.54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104.56%로서, 보수적인 예산 편성으로 실제 수납액이 세입예산 현액보다 많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재산세 1,181백만 원, 지방소비세 511백만 원, 부동산교부세 6,698백만 원과 조정교부금 33,372백만 원,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17백만 원 등이 발생하여 일반회계 초과 수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시지가의 증감율, 비과세 감면, 세율 등 지방세법의 개정과 건축허가 사항, 지난연도 수입 징수예상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세수입 확보 측면에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96.69%로 전년도(96.86%)에 비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의 체납분인 지난년도 수입의 수납율(일반회계 16.09%, 특별회계 6.39%)이 저조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체납세액의 징수강화 등을 통하여 세수입 확보의 적정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나. 세입의 편성비율

(단위: 원, %)

구 분		예산현액 (B)	비율 (B/A)	징수 결정액 (C)	비율 (C/B)	실제 수납액 (D)	비율 (D/C)	정리보류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계(A)		1,140,784,016,450	100	1,224,430,736,755	107.33	1,195,471,880,235	97.63	1,927,269,540	27,031,586,980
	지방세	118,518,892,000	10.38	121,536,407,020	102.54	119,754,887,860	98.53	140,334,630	1,641,184,530
	세외수입	53,933,645,000	4.72	93,685,138,731	173.7	66,510,303,141	70.99	1,786,934,910	25,387,900,680
	지방교부세	16,862,100,000	1.47	23,660,757,700	140.31	23,660,757,700	100	-	-
	조정교부금등	237,265,673,000	20.79	270,638,193,940	114.06	270,638,193,940	100	-	-
	보조금	508,552,934,000	44.57	508,566,333,470	100	508,566,333,470	100	-	-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205,650,772,450	18.02	206,343,905,894	100.33	206,341,404,124	99.99	-	2,501,770
특별회계 계(A)		27,864,635,240	100	39,300,579,490	141.04	26,535,731,230	67.51	1,243,745,690	11,521,102,570
	의료급여 기금	1,136,220,000	4.07	1,774,520,150	156.17	1,187,183,760	66.9	64,428,750	522,907,640
	주차장	26,728,415,240	95.92	37,526,059,340	140.39	25,348,547,470	67.54	1,179,316,940	10,998,194,930

세입의 편성비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및 보조금 편성비율이 66.83%로 의존재원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 편성비율은 4.72%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70.99%로 징수율이 저조한 편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편성 비율이 95.9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수납율은 67.54%로 저조합니다.

그러므로,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미수납액 비율이 높은 일반회계 세외수입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분야에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부재원 확보가 중요하므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이 일정비율로 교부될 수 있도록 투명한 공개와 자료공유가 필요합니다.

세입예산의 편성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비율이 일반회계 107.33%, 특별회계 141.0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세외수입 173.7%, 특별회계의 의료급여 부문 156.17%, 주차장 부문 140.39% 등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징수 전망, 사업계획, 징수결정액 추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추계에 있어 합리성과 적정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타이자수입·그외수입 등 일부 과목에 대하여는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 또는 담당자의 관심 부족으로 전년도 예산 편성 자료만을 참고하여 당초 예산에는 편성하지 않고 결산과정에서 세입 예산과목을 신설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건전한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향후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과거의 부과·징수 현황을 평균하여 산출하는 등 정확한 세외수입 추계분석을 통한 실제 징수결정액에 근접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

2023년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원)

구 분	미수납액	무재산	납세태만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국외이주	기타
		행방불명	폐업또는부도	소송계류	자금압박	납기미도래
합 계	38,552,689,550	3,730,947,510	30,167,747,220	-	7,776,570	14,172,230
		1,687,146,110	1,658,475,990	-	-	1,286,423,920
일반회계	27,031,586,980	3,365,099,580	19,077,106,640	-	7,776,570	14,172,230
		1,687,146,110	1,658,475,990	-	-	1,221,809,860
특별회계	11,521,102,570	365,847,930	11,090,640,580	-	-	-
		-	-	-	-	64,614,060
의료급여기금	522,907,640	365,847,930	157,059,710	-	-	-
		-	-	-	-	-
주차장	10,998,194,930	-	10,933,580,870	-	-	-
		-	-	-	-	64,614,060

미수납액은 총 38,552,689,550원이며, 징수결정액에서 실제수납액과 정리보류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계속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미수납액의 원인별 사유 중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국외이주의 경우 징수에 대한 비용과 실적을 비교 검토하여 소멸시효완성 전이라도 정리보류하고, 사후 관리 절차를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면서,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한 후 즉시 징수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건전재정운영이나 징수 관리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합니다.

미수납액 사유 중 기타는 분류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며, 납기미도래는 연도 말에 부과하여 다음연도 1월에 납부기한이 도래되는 건들로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볼 때는 미수납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의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수납액 징수율이 2022년 대비 4.42%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상당한 금액의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합 계	40,820,806,741	41,603,910,041	39,167,151,460	40,336,906,690	38,552,689,550
일반회계	25,536,557,110	26,656,162,310	25,514,731,630	27,635,943,120	27,031,586,980
특별회계	15,284,249,631	14,947,747,731	13,652,419,830	12,700,963,570	11,521,102,570
의료급여기금	536,445,500	649,088,650	577,912,180	560,298,250	522,907,640
주차장	14,747,804,131	14,298,659,081	13,074,507,650	12,140,665,320	10,998,194,930

일반적으로 징수의 난이도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년도 부과분이 징수하기 제일 수월하고, 체납 1년차, 체납 2년차, 체납 3년차로 갈수록 징수가 어려우므로 현년도분 부과 부서에서는 징수율을 최대한 높여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38세금징수과로 이관한 후에도 부서 간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체납분 징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라. 세입금 정리보류

2023년도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

(단위: 원)

구 분	정리보류액	사 유 별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
합 계	3,171,015,230	2,034,036,680	834,970	1,127,535,930	8,607,650
일반회계	1,927,269,540	790,478,130	834,970	1,127,348,790	8,607,650
특별회계	1,243,745,690	1,243,558,550	-	187,140	-
의료급여기금	64,428,750	64,428,750	-	-	-
주차장	1,179,316,940	1,179,129,800	-	187,140	-

정리보류액 총액 3,171,015,230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대부분이 지난연도수입(체납분) 중에서 처분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소멸시효완성 41.01%, 무재산이 58.49%로 비중이 크며, 특별회계의 경우 대부분이 소멸시효완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보류액 중 무재산 사유가 많으므로 철저하게 재산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년도 수입 중 부과금액이 소액이고 부과연도가 오래된 악성 미수납액은 신속하게 정리하여 현실적인 미수납액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세입금 환급

세입금환급은 모든 세입금의 징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유는 행정기관착오, 납세자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미등기, 법령개정, 그리고 사유가 분명하지 않은 기타로 구분됩니다. 세입금환급은 금액의 크고 작음 보다 행정의 신뢰도 저하와 행정력 낭비라는 측면에서 최소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세입금 환급 현황

(단위: 원)

구 분	환급액	사 유 별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법령 개정	법인 정산	기타
합 계	385,130,670	32,936,530	23,458,530	24,907,110	92,980,290	41,877,240	6,023,600	162,947,370
일반회계	323,099,410	32,936,530	23,458,530	22,805,400	63,347,010	41,877,240	6,023,600	132,651,100
특별회계	62,031,260	-	-	2,101,710	29,633,280	-	-	30,296,270
주차장	62,031,260	-	-	2,101,710	29,633,280	-	-	30,296,270

바. 과태료

과태료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며, 형벌이 아니므로 그 부과절차도 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과태료 현황(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과태료	2,708,308,870	2,524,971,240	1,749,933,540	1,476,488,450	1,575,410,960
증감율(%)	21.62	△6.77	△30.69	△15.63	6.69

2023년도 과태료는 전년 대비 6.6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위기 단계 감소로 일상생활 재개에 따라 단속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벌칙적인 것이어서 대부분 납부에 저항감이 있으므로 징수에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부과 과정에서 개별 법령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고,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가산금 부과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하기 바라며,

부과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 이내 경감된다는 점, 체납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 등을 함께 고지하여 징수율 제고에 활용하고, 체납액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매년 산정하여 징수결정액을 변경 관리하기 바랍니다.

사. 순세계잉여금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75,573,283	66,600,080	90,195,624	120,123,670	95,478,741
일반회계	67,198,472	62,414,713	89,359,407	119,896,788	95,260,521
특별회계	8,374,811	4,185,367	836,217	226,882	218,219

총 세입금액에서 총 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결산상 잉여금이라 하며,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실제반납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95,478,741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는 24,636,267천 원, 특별회계는 8,663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0,967천 원, 주차장특별회계 167,252천 원 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53,289,500천 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추가 사용 가능한 순세계잉여금은 41,971,021천 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69,560천 원 계상하였으므로 실제 사용 가능한 순세계잉여금은 97,692천 원 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반영을 낮춤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초예산에 반영할 순세계잉여금은 각 부서별로 세목별 집행잔액을 단순추계방식으로 세심하게 추계하고, 추계된 항목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지출을 통제하여 추계된 금액이 지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

2. 세출 부문

가. 회계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2023년도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총 계	1,168,648,651,690	42,133,180,583	6,419,659,793	25,905,590	391,923,760
			2,666,254,940	22,144,273,500	10,485,163,000
일반회계	1,140,784,016,450	40,586,057,363	6,258,090,963	25,905,590	391,923,760
			2,642,992,740	20,781,981,310	10,485,163,000
특별회계	27,864,635,240	1,547,123,220	161,568,830	-	-
			23,262,200	1,362,292,190	-
의료급여기금	1,136,220,000	3,240	-	-	-
			-	3,240	-
주차장	26,728,415,240	1,547,119,980	161,568,830	-	-
			23,262,200	1,362,288,950	-

집행잔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대비 96.39%를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 42,133,180,583원이며, 집행잔액 총액 대비 보조금정산잔액 15.23%, 낙찰차액 6.32%, 지출잔액 52.55%,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0.93%, 예비비 24.88%로 나타나 지출잔액, 보조금정산잔액, 예비비가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신속집행 계획을 시행함에 따라 예산절감액은 예산집행계획 중 의무절감계획에 의하여 배정하지 않은 금액 등이 해당됩니다.

집행잔액과 초과세입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되어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경우 세출예산을 과다편성 하였거나 사업성과 저하 등 부정적 측면도 있으므로 적정한 금액이 편성되어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 성과가 나타나도록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일반회계)

(단위: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회계	26,927,718,740	40,871,231,913	65,967,098,502	65,684,414,490	40,586,057,363
증감율(%)	△36.32	51.78	61.40	△0.43	△38.22

연도별 집행잔액 발생 현황(일반회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2021년 대비 큰폭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정상화 되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집행잔액(30% 이상) 과다 발생

계획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최소 예산으로 최대로 효과를 달성하는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적극 장려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추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도별집행잔액(30%이상) 과다발생

(단위: 원)

구분	부서 수	세부사업 수	집행잔액	비고
2023년	31	110	14,767,884,665	
2022년	32	109	15,031,310,728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30%이상 과다 발생은 31개 부서, 110개 세부사업, 14,767,884,665원으로 나타나 2022년 대비 1.75%, 236,426,063원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성과를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이 계상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 회계연도 내에 사장되는 예산이 최소화 하도록 감추경하여 운영할 것을 권합니다.

다.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예산은 편성 할 때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계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칙으로 인한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는 전용 근거와,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전용 제한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전용과 변경의 절차, 범위, 제한 등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용제한 사항으로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 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 할 수 없으며, 전용 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 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합니다.

예산은 관악구청장의 권한 하에서 편성하고, 관악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되므로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의하여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후에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때를 전·후한 1개월 정도 기간에는 전용과 변경, 예비비 지출 요인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의회의 심의 확정 후 집행할 것을 권합니다.

예산의 전용과 변경 현황(일반회계)

(단위: 원)

연도	전 용		변 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9년	38	507,218,000	42	2,087,643,000
2020년	44	1,964,129,000	71	1,168,215,000
2021년	38	747,075,000	32	2,712,295,000
2022년	42	1,433,881,000	41	1,104,379,000
2023년	52	1,847,652,000	51	2,528,119,000

2022년 대비 전용은 413,771천 원 증가하였고, 변경은 1,423,740천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경사용의 주요사유인 공공요금의 경우 연내에 수차례 전기요금 인상 발표가 있어 공공요금 증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예산을 전용 내지 변경할 것이 아니라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재·개정 시 예산이 편성될 때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여 적절한 예산 편성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라. 국·시비 보조금에 관한 사항

2023년 국·시비 보조금 현황(당해)

(단위: 원)

구분	총사업비(예산현액)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계	637,071,696,340	637,085,095,810	595,948,214,645	20,457,166,590	20,679,714,815
일반회계	국비	305,361,566,000	305,365,647,580	298,225,862,729	509,953,060	6,629,831,791
	시비	203,191,368,000	203,200,685,890	190,062,272,060	6,341,980,870	6,796,433,200
	구비	118,541,582,340	118,541,582,340	105,274,566,196	6,340,220,940	6,926,795,20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국비	478,700,000	478,700,000	439,789,060	-	38,910,940
	시비	478,700,000	478,700,000	439,789,060	-	38,910,940
주차장 특별회계	시비	3,108,990,000	3,108,990,000	547,795,200	2,472,146,350	89,048,450
	구비	5,682,050,000	5,682,050,000	857,124,300	4,792,865,370	32,060,330
식품진흥기금	시비	25,000,000	25,000,000	23,800,000	-	1,200,000
	구비	203,740,000	203,740,000	77,216,040	-	126,523,960

1) 보조금 총사업비(예산현액)와 보조금수령액의 차액 발생

국·시비 보조금은 사용 목적이 정해져 시달되며, 사업비는 전년도에 당초예산 편성 당시 시달된 가내시액 통보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 연도에 보조금 확정 통보액이 교부되면 간주처리 후 집행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총사업비(예산현액) 금액과 보조금수령액은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지방예산 통계처리 방법”에 지방자치단체 내부거래 세입·세출은 반드시 일치하도록 편성하고, 광역과 기초단체는 예산결정권과 의결권이 상호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세출이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으나 상호 협조하에 최대한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보조금 총사업비(예산현액)와 보조금수령액과의 교부차액은 천 원단위로 편성되는 예산액과 10원단위로 시달되는 수령액과의 차액 및 사업부서에서 간주처리를 하지 않은 건 등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일반회계 13,399천 원으로서 이는 세출결산서상 ㉯란의 보조금반납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수예산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 계산 시 공제하는 보조금실제 반납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서울시 및 국가에서 확정통보되어 내려온 예산을 그대로 두어 전액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보조금 간주처리 미실시

이태원 사고대상자 장례비 지원등으로 내려온 국·시비를 우리구는 대상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간주처리 하지 않아 예산에 미편성하는 등 일부 부서에서 보조금 편성을 누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금액은 그대로 초과세입으로 잡혔고, 2024년도에 전액 그대로 반납해야 하는 바, 추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시비 보조금을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라며, 예산의 집행여부와 상관없이 국·시비 보조금이 예산편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3) 국·시비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

국·시비 보조금 예산은 국가 및 서울시에서 관악구에 필요하다 인정한 예산입니다. 관악구는 외부재원 의존도가 높아, 이러한 국·시비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동절기 제설대책 비용 등의 일부 사업이 교부받은 국·시비 보조금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는 다음연도에 전액 국가 및 서울시로 반납해야 하는 바, 각 사업부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관리대상자 인원수에 따라 방문간호사 인력이 차등배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마. 이월비

1) 명시이월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악구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 자치구기타재원조정수입은 예산승인(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교부된 사업비의 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명시이월액	건수
계	98,623,502,550	64,206,073,950	37,642,637,230	44,339,631,260	39
일반회계	86,314,054,300	56,909,779,110	36,319,098,200	37,074,619,540	37
특별회계	12,309,448,250	7,296,294,840	1,323,539,030	7,265,011,720	2

2023년도 명시이월 현황은 상기 표와 같으며,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 보조금·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의 연말 교부, 부지 매입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이며,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24년도로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항에는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 대상으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등으로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세출예산의 이월)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사고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의 내용은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당초에는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에 대하여만

사고이월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동 사고이월의 경우를 확대하여 집행의 원활을 도모하고, 세계잉여금의 감소를 꾀하도록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영공사 등의 경우에는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으면 공사비의 다른 부문에서 지출원인행위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체로 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비 현황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원인행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건수
계	94,703,624,610	74,202,692,440	44,240,072,250	20,661,485,120	46
일반회계	86,044,176,360	70,372,752,690	44,001,521,500	17,070,096,120	45
특별회계	8,659,448,250	3,829,939,750	238,550,750	3,591,389,000	1

2023년도 사고이월 현황은 상기 표와 같이 46개 세부사업에 20,661,485,120원이며, 이월 사유는 사업비가 연말에 확보되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움, 주민협의 및 사전절차 이행 기간 소요, 준공기한 미도래, 용역 기간 연장 등이며, 예산을 2024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 예 비 비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예비비 금액의 범위를 정하고,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재해·재난 예비비는 별도 편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4조(예비비)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제2항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일반회계)

(단위: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11	72	8	25	9
지출결정액	527,195,000	12,831,414,000	222,548,000	31,018,580,000	5,860,671,000
지출액	519,826,780	12,772,134,073	185,802,240	24,935,209,078	5,810,956,770
이월액	-	-	-	-	-
집행잔액	7,368,220	59,279,927	36,745,760	6,083,370,922	49,714,230

2023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은 5,860,671,000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2019년, 2021년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중대산업재해예방 과태료 납부 170,000,000원, 혹한기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166,300,000원,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29,000,000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비비의 지출 제한”을 보면 그 성격이나 제도의 취지라는 측면에서 내재적 제약과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구분하고,

내재적 제약으로 연도 중의 계획이나 여건변동에 의한 대규모 투자지출의 보전, 다음 연도로의 이월을 전제로 한 경비에 소요되는 것이나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지출해서는 안 되며,

실정법상 제약(「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으로 예산편성이나 지방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업무추진비, 보조금 등이 그 예로써 이들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음. 단,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으로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사용승인요청 전에 실정법상 한계나 내재적 한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전용이나 변경 등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불가피한 경우에만 승인요청하여 사용할 것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후한 1개월 정도 기간에는 예비비 사용보다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실정법상 한계나 내재적 한계를 감안하여 공공요금인상분을 재해·재난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예측가능한 것으로 추경등에 편성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며, 과태료 납부분에 대하여 중대재해 사업장 의무위반등의 사유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겠습니다.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승인 요청 시 지출사유와 지출금액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4. 기 금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기금의 기본 원칙으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의 활용도·건전성 제고,” “기금사업 중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운용 혁신”에 두고 있으며,

단일기금에 대한 구조화원칙으로 통합하지 않은 단일기금의 경우 하나의 목적사업이 존재하므로 ‘고유목적사업’ 과 ‘재무활동사업’의 2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하고, 지출이 없는 적립성기금 등은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구조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등 총 15개(16종) 기금 운용내역

(단위: 원)

전년도 말 조성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 말 조성액	비고
	계	조성액	사용액		
79,683,878,212	13,477,667,994	29,217,265,459	15,739,597,465	93,161,546,206	

기금의 전체 규모는 전년도말 조성액 79,683,878,212원, 2023년도에 29,217,265,459원을 조성하고 15,739,597,465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3,477,667,994원이 증가한 93,161,546,206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지난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2,206,015,520원에 이르는 바, 해당 내역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금징수, 정리보류등을 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216-01) 현황

(단위: 원)

종 류	수입계획 현액	실제수납액	초과세입	비율	비 고
합 계	2,350,358,000	3,621,637,030	1,271,279,030	54.09%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8,509,000	8,508,500	△500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898,693,000	1,297,445,799	398,752,799	44.37%	
중소기업육성기금	80,000,000	232,064,299	152,064,299	190.08%	
남북교류협력기금	3,220,000	7,873,762	4,653,762	144.53%	
고향사랑기금	-	-	-	-	
자활기금	42,150,000	62,265,516	20,115,516	47.72%	
양성평등기금	32,060,000	45,689,316	13,629,316	42.51%	
노인회관건립기금	345,495,000	342,226,463	△3,268,537	△0.95%	
노인요양원건립기금	12,958,000	-	△12,958,000	△100.0%	
체육진흥기금	4,403,000	12,010,880	7,607,880	172.79%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11,814,000	28,865,235	17,051,235	144.33%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779,780,000	1,218,155,044	438,375,044	56.22%	
재난관리기금	68,000,000	227,007,265	159,007,265	233.83%	
옥외광고발전기금	8,276,000	17,937,564	9,661,564	116.74%	
도로굴착복구기금	40,000,000	98,035,065	58,035,065	145.09%	
식품진흥기금	15,000,000	23,552,322	8,552,322	57.02%	

상기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금 운용 공공예금이자수입 수입계획 현액과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기예금 또는 공공예금으로 운용할 것인지를 결정한 후 예치원금(평균잔액), 이자율, 예치기간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수시로 은행과 협의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시키도록 하고, 그에 따라 수입계획도 변경하여 실제수납액과의 차이를 최소화 할 것을 권합니다.

5. 재무제표

가. 외부 검토인 검토 절차

관악구의 2023년도 결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검토인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제5장 제2절 검토인의 선정 및 검토기준 요건을 만족함을 확인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업무를 위하여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60일 이내에 재무제표 등 결산에 관련된 서류를 검토인에게 제출하였고 검토인은 결산검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검토를 완료하였으므로 시기와 관련된 요건도 적정합니다. 따라서 검토인의 적격성 및 검토 절차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 검토인의 검토 결과

검토인의 검토대상이 된 재무회계 결산서는 재무제표 등 결산에 관련된 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의견에 따르면 관악구의 2023년도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 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상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출납 폐쇄기간 이후 결산 검사일까지 검토인에게 추가로 검토를 의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부록1 재무제표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점검한 결과 검토인의 검토의견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 검토인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검토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제5장 제3절 검토보고기준에 의하면 “검토인은 검토보고서와 별도의 문서로 재무제표의 검토업무 수행절차 및 검토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견된 회계처리, 재무회계 제도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그 수정방안 및 개선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문서는 재무제표에는 첨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인이 제출한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 업무 수행절차 및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검토인은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문제점과 그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1) 학자금예치금 회수예정액의 유동성 분류

지자체 복식부기 운영규정 상 학자금예치금은 장·단기 구분 없이 장기로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공무원 학자금 융자규모가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매년 회수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학자금예치금 계정이 없어 지자체는 이를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으로 보정분개 처리한 바,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하여 학자금예치금의 유동성 분류를 위한 계정과목 신설 건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조사서식의 완전성을 위한 방안마련

각 실무담당자가 제출하는 조사서식은 결산보정분개 반영, 이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수치의 오류 여부를 검증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수합한 조사서식은 완전성 검토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호조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각 담당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호조상 수치와 조사서식을 비교 대사하는 프로세스를 필히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간 주기적인 교육과 서식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재무제표 수정사항 및 권고 사항

검토인의 검토 및 결산검사 과정에서 일부 회계과목 분류의 오류가 발견되어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성질별) 학자금위탁대여금 조정사항

(단위: 원)

회계	회계과목	관리과목	수정전	수정후	차액
일반회계	단기대여금	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	-	191,215,000	191,215,000
	장기대여금	학자금위탁대여금	5,195,254,515	5,004,039,515	△191,215,000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학자금위탁대여금 중 2024년 회수예정액을 단기대여금(단기지방공공기관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학자금 융자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매년 회수수입이 발생하여 학자금위탁대여금의 단기항목 신설이 필요합니다.

재정운영표 자체보조금반환금수익 현황

(단위: 원)

과목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내부거래	계
Ⅵ. 수익	-	-	478,687,103,405	(26,506,092,695)	452,181,010,710
1.자체조달수익	-	-	154,806,531,660	-	154,806,531,660
임시세외수익	-	-	15,213,045,410	-	15,213,045,410
2.정부간이전수익	-	-	297,055,143,360	-	297,055,143,360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	-	1,643,249,870	-	1,643,249,870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 자체보조금반환수익(4207-02)의 내용이 전년도 민간보조금 반납금이므로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4207)보다는 임시세외수익(4103)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하여 자체보조금반환수익이 임시세외수익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성과 보고서

2023년도 관악구 예산 성과사업은 전략목표 9개, 정책사업 목표 47개, 지표수 13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구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운영한 결과 90.51%인 124개 지표를 목표 달성하였으며, 13개 지표의 운영 결과가 미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과 목표와 예산 결산 내용

(단위: 백만 원)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9	47	137	27	97	13	1,044,567	1,097,285	△52,718

결산검사 과정에서 성과지표(단위)를 (%)로 설정하여 목표, 실적이 백분율로 표시되고, 그 백분율로 달성율을 산출하여 목표지표 및 실적지표에 대한 정량 파악이 어려운 사례, 부서의 업무 중 정책사업과 연계된 핵심 사업은 반드시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관리되어야 함에도 계량화 및 실적 측정의 어려움 등으로 목표에서 제외된 사례, 부서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성과지표로 정했거나, 목표수준을 낮게 설정하여 큰 노력을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목표를 달성한 사례 등은 향후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 성과관리 제도는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성과사업인 만큼 예산과 무관한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 사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아울러 성과목표를 초과달성하거나 미달성한 경우에는 심도 있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사업 추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Ⅳ. 수범사례

1.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 3년 연속 수상

관악구는 매년 엄격한 회계 관리로 불필요한 예산을 정비해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결산검사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알기쉬운 관악구 결산정보’에는 관악구의 특수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여 주민들이 알기쉽게 결산서를 만들었고, 공유재산의 변동 내역을 꼼꼼히 기록해 재무제표와 공유재산 간 차이를 전국 최소 수준인 1%가량으로 낮추었습니다. 이 같은 결과로 ‘2020회계연도 제4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우수상, ‘2021회계연도 제5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대상, ‘2022회계연도 제6회 한국 지방자치단체 회계대상’에서 장려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였습니다. 3개년 연속 수상한 것은 관악구의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 및 철저한 재정집행을 인정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